



즉시 배포용: 2020년 10월 28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유틸리티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추가 집행 조치를 도입하는 법안을 소개**

*폭풍 대응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 상한을 제거하는 신규 법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실패가 반복되는 가운데 사업 철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화*

*PSC는 의무적으로 유틸리티 기업 임원에게 지급되는 지방세액의 상한을 설정*

*PSC는 또한 롱아일랜드의 민간 상수도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

*주 의회에서 롱 아일랜드 대표가 법안 지지 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열대 폭풍 이사이아스(Tropical Storm Isaias)와 같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극심한 기상 사태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해 유틸리티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정부의 집행 수단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신규 법안에 따라 비상 대응 계획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기타 공공 서비스법(Public Service Law, PSL), 규정 또는 공공 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PSC) 명령을 위반을 구성한 이해 관계자는 크게 늘어난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법에 따라 성공적 대응에 지속적으로 실패한 유틸리티 기업의 사업 철회 과정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신속해집니다. 또한 해당 법에 따라 PSC는 유틸리티 기업 임원에게 지급되는 지방세액의 상한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은 또한 아메리칸 워터(American Water)와 같은 롱아일랜드의 민간 수도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할 것입니다. 주 의회의 롱아일랜드 의원 대부분이 이번 발표에 함께 참여하여 본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틸리티 기업의 사업권은 신이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뉴욕주의 시민들이 이러한 회사에 사업권을 주었습니다. 뉴욕주의 시민들이 유틸리티 기업의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면, 시민들은 이러한 운영권을 다시 빼앗아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고, 철회를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수단은 현행 법 아래에서 즉시 시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법은 바꾸어야 합니다. 뉴욕

주민들은 유틸리티 기업이 거대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면서 이들에게 농락당해 왔습니다. 유틸리티 기업의 공공 신뢰의 남용은 뉴욕주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유틸리티 기업은 그들로 인한 피해액에 상응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 상한을 없애고 사업 철회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유틸리티 기업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새로운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 케이블, TV 및 수도 등에서 기타 유형의 유틸리티까지 단속 메커니즘 확장
- 주정부 기관이 장기간의 정전으로 인한 음식 부패 및 약물 손상과 같은 소비자 손해에 대해 한 가구 당 최대 500 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 서비스 중단 발생 시 유틸리티 기업이 고객과 더욱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의무화

현행 규정 내에서 전력 회사가 PSC에 비상 대응 계획을 제출하며 극심한 기후 상황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러한 계획 수립해야 합니다. 최근 사건들은 PSL에 근거한 처벌이 이러한 비상 대응 계획을 위반하는 행동이나 대응 부족을 충분히 방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위반은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요금을 납부하는 고객들은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기업은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부문에 대하여 더욱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상한을 제거하고 현행 벌금 평가 시스템을 공공 유틸리티 기업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초래한 손실의 성격 및 범위를 고려하여 벌금을 설정하는 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공공 서비스법을 개정하여 벌금 규정을 강화합니다. 현재 주요 정전 또는 사건으로 인한 복원을 포함하여 전기 서비스의 신뢰성 및 연속성 관련 처벌은 각 별개 및 명확한 위반에 대해 100,000 달러 또는 연간 주내 총 운영 세입의 1%의 0.02 중 더 큰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중대한 정전 사건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전기 서비스 복원 시 가스 및 전기를 모두 관리하는 공익사업체에 대한 처벌은 500,000 달러 또는 1%의 0.04로 상승합니다.

이 철회의 내용을 분명히 규정한 법안은 변전소, 케이블 및 트럭과 같은 자산의 소유권 및 이전을 포함한 질문을 통해 신규 운영자가 이를 인수할 경우 자금을 조달한 지방세 납세자에게 이를 다시 청구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PSC가 유틸리티 기업의 사업 인증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법안에 따라 차기 운영자의 지정 권한을 부여하며 이에 따라 운영권 이전 기간에도 공공의 이익에 따라 유틸리티 운영을 계속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이 법안에 따라 PSC는 롱아일랜드의 민간 수도 공급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아 고객에게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연구할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수도 서비스의 품질 및 민간 수도 기업의 관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최근 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본 법안에 따라 PSC는 2021년 4월 1일까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Jim Gaughr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 수도 이용권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뉴욕 아메리칸 워터(New York American Water)는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요금과 부끄러운 비즈니스 관행으로 롱아일랜드 주민들을 이용해 왔습니다. 민간 수도 회사가 롱아일랜드 주민을 속여 수익을 내지 않도록 막기 위한 싸움에서 Cuomo 주지사가 보여주신 리더십과 파트너십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고대합니다. 모든 롱아일랜드 주민안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 수도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Kevin Thoma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유틸리티 기업들은 특히 롱아일랜드에서 고객과 주정부의 신뢰를 악용했습니다. 소비자 보호 위원회(Consumer Protection Committee) 의장으로서 저는 유틸리티 기업들이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완수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이 중요한 법안을 지원하여 뉴욕의 고객 보호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어주신 Cuomo 주지사와 제 동료들에게 감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John E. Brook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가 제안한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이 법안에 따라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민간 소유 유틸리티 서비스 기업의 신뢰할 수 없는 운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더욱 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나소 카운티 지역사회 다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소유 수도 기업의 고위 운영진과 만나 의심스러운 운영 정책, 효율 책정, 보수적 효율 책정의 효율성, 소화전 비용, 세금 등에 대한 다양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롱아일랜드의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PSC 연구가 대중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odd Kaminsky**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스 쇼어의 롱아일랜드 주민들은 아메리칸 워터와 유틸리티 기업에 질려버렸습니다. 이들은 실패를 계속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거부합니다. 오늘 주지사의 조치는 우리가 더 이상 이들의 부정한 관행,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객을 이용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법안은 수도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고객에 대한 의무를 완수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Monica Martinez**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여 유틸리티 기업이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자연재해 및 폭풍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주민들과 적절하게 소통하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내버려둘 경우, 이러한 유틸리티 기업의 행동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공공 서비스 위원회에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이 유틸리티 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고객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롱아일랜드는 특히 자연 재해에 취약하며 우리에게 고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믿을 수 있는 유틸리티 기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어진 고된 시기,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재택 근무를 하는 지금 시점에 특히 그렇습니다."

**Anna Kaplan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공공 서비스 엔터프라이즈 그룹(Public Service Enterprise Group Long Island, PSEG-LI), 알티스(Altice), 버라이즌(Verizon)은 열대 폭풍 이사야스 대응에 철저히 실패하여 롱아일랜드 주민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관리 규정을 만들어 이러한 유틸리티 기업이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민을 위한 더 나은 소비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며, 만약 이들이 비상 사태에 롱아일랜드 주민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주정부 이들을 대체할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주신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올버니로 복귀한다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Charles Lavine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주민들은 공공 유틸리티, 케이블 및 통신 회사와 민간 수도 기업으로 인해 너무 오랫동안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지지하는 이번 법안은 우리 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Judy Griff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저급한 품질의 불안정한 서비스를 받아 온 아일랜드 고객, 그리고 21번 하원 지역구(Assembly District 21) 고객에게 에게 큰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공공 유틸리티 기업에게 고객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마침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번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패 상황에 대해서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니다."

**Michelle Solag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주거 관련 유틸리티 문제에서 뉴욕 주민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특히 긴급 상황에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민간 유틸리티 기업이 고객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동료 및 **Cuomo** 주지사와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Taylor Darling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 신뢰를 저버리는 유틸리티 기업에 책임을 묻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뉴욕 주민은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누려야 하며, 이번 법안은 적절한 집행을 도입하여 유틸리티 기업의 행동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전에 뉴욕주 공공 서비스부가 기록적인 시간 내에 열대 폭풍 이사야스와 관련된 공익사업체의 준비 및 복구 노력에 대한 첫 번째 단계의 조사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서는 콘 에디슨(Con Edison), 오렌지 앤 록랜드(Orange & Rockland), PSEG-LI 및 센트럴 허드슨(Central Hudson)의 4개 전기서비스 제공업체와 전화, 케이블 및 인터넷 제공업체인 알티스-옵티멈(Altice-

Optimum)에 명백한 위반 통지(Notice of Apparent Violation)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은 이들이 무거운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며 남은 허리케인 시즌 동안 유사한 실패를 겪지 않도록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알립니다. 이것은 DPS가 처음으로 명백한 위반 통지와 함께 조사 절차를 우선하는 것이며, 이들은 통상적인 12~24개월의 조사 절차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